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92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백선희 · 이수진 · 김 윤
서왕진 · 강경숙 · 황운하
이학영 · 이해민 · 서미화
박은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전자담배”를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이하 “전자담배”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담배”를 “전자담배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하 이 조에서 “담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지정소매인”을 “지정소매인 또는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을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을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담배”를 “담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배”를 “담배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전자담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 ----- <u>전자장치를 사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연초 니코틴 용액인 액체 형태의 담배(이하 “전자담배”라 한다)</u>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u>담배</u> 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u>전자담배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하 이 조에서 “담배등”이라 한다)</u> -----.
1. <u>지정소매인</u> 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지정소매인 또는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u> ----- -----. ----- ----- -----.

2. ~ 4. (생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u>담배</u>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 4. (생략) ④ 제조자등은 <u>담배</u>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u>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u> <u>자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u>-----. --<u>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u>----- -----. ③ ----- ----- -----. 1. -----<u>담배등</u>----- ----- ----- 2. ~ 4. (현행과 같음) ④ -----<u>담배등</u>----- ----- ----- -----. ⑤ (현행과 같음)
---	--